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승계를 하는 자	성명 (법인인 경우, 법인명 및 대표자명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		
	주소 (전화번호)		
승계를 받는 자	성명 (법인인 경우, 법인명 및 대표자명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		
	주소 (전화번호)		
	제조소 소재지 (제조업에 한정합니다)		
제조업자 등	명칭 (상호)	승계 전	승계 후
	영업의 종류	[]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[]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[]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[]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[] 위탁제조판매업 []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[]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[]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[]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[]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[]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[]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[] 품목허가(신고) [] 동물용의약품도매상	
	소재지		
	제품명	승계 전	승계 후
승계 사유	[] 양도·양수 [] 상속 [] 합병 [] 기타()		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신고인 제출서류	- 허가증 또는 신고증 -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양수인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(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양도·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법 제5조제1호 본문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본문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단서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 의사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3호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※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제출서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.	수수료 1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통지

농림축산검역본부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시·군·구(교부)

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약사법」 제71조, 제72조,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, 제76조의2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52조제1항,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	약사법령 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
2) 양도·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1호가란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.
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52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

(서명 또는 날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

(서명 또는 날인)

주소